

2.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

法律 第5,138號 1995. 12. 30

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중 “고의 또는 과실로”를 삭제하고, “발생하게 한 설계자·시공자·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”를 “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·시공자·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”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3(벌칙) 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3조(양벌규정) ①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·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요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◇

공동주택의 설계·시공이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고의에 의한 경우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고, 이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건설공사가 건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◇주요골자◇

- 가. 공동주택의 설계·시공 및 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초래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,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(법 제50조의2).
- 나. 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법 제50조의3).
- 다.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법 제53조.)

〈법 제처 제공〉

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